

부속서 3-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일반주해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의 해석 목적상,
 - 가. 특정 호, 특정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에 적용되는 특정 규정 또는 특정 규정들은 그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 바로 옆에 규정된다.
 - 나. 세번변경의 요건 또는 기타 특정 규정에 명시된 조건은 비원산지 재료에만 적용한다.
 - 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한 규정에서 중량에 대한 언급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서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건조 중량을 의미한다.
 - 라.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하며, 적용 가능한 경우,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포함한다.
 - 마. “그 군 이외의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 군 이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이라는 표현은, 규정이 적용 가능한 호(또는 소호)가 속하는 군 내의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모든 다른 호(또는 소호)로부터의 변경을 의미한다.
 - 바. 다음의 표현은
 - “그 호 내에서의 변경”,
 - “그 소호 내에서의 변경”,
 - “이들 호 중 하나에서의 변경”,
 - “이들 소호 중 하나에서의 변경”,
 - “(특정 세번) 내에서 (특정 세번)의 (상품)으로 변경” 또는
 - “(특정 세번) 내에서 (특정 세번) 중 하나의 (상품)으로 변경”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동일 호(또는 소호)의 다른 상품 또는 재료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 사. 두 개 이상의 규정이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 또는 소호에 적용

되고 선택규정이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경우,

- 1)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세번변경은, 그 호, 소호 또는 일군의 호나 소호에 적용 가능한 첫 번째 규정에서의 변경을 의미한다.
- 2) 선택규정에 의해 허용된 유일한 세번변경은, 그 규정의 시작 부분에 명시된 세번변경과 더불어, “인지 상관없다”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변경이다.
- 3) 달리 명시되지 아니하는 한, 선택규정의 시작 부분에서 언급되고, “단,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서 다시 명시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에 포함된다. 그리고
- 4) “인지 상관없다”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구문에 명시된 세번변경을 충족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아.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류를 말한다.

호란 4단위 숫자, 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번호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부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부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6단위 숫자, 또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분류법에서 사용하는 번호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2.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생산을 나타낸다. 그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요구보다 생산이 더 수행된 경우에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3. 상품에 적용 가능한 부속서의 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및 최대 비원산지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 제3.8조의 최소허용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비원산지재료의 사용을 허용하며, 그러한 재료의 가치가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비율은 최소허용기준의 사용을 초과할 수 없다.

4. 제품에 적용 가능한 이 부속서의 규정이 세번변경기준 및 비원산지재료의 최대 비율을 포함하는 경우, 그리고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 재료가 동일한 소호 또는 더 이상 소호로 세분화되지 아니하는 호에 분류되는 경우, 해당 제품은 제3.3조제2항이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품과 함께 분류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제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 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그 제품은 원산지 제품으로 간주된다. 그에 따라 생산된 제품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다면, 그 제품이 다른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그 제품에 포함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경우 최종제품의 원산지 결정 목적상, 최종 제품생산에 사용되고 이 부속서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다른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만이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 산정시 고려될 것이다.

5. 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은 중고제품에도 적용된다.

제2부 -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제 1 부	살아 있는 동물, 동물성 생산품(제 1 류-제 5 류)
제 1 류	살아 있는 동물
01.01 - 0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 류	육과 식용 설육(脛肉)
02.01 - 02.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7.11 - 02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07.24 - 0207.6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09.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210.11 - 0210.9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210.9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제 0105 호의 갈루스 도메스티쿠스 종의 가금류(닭)의 것은 제외한다]의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3 류	어류와 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주 :	당사국의 영역에서 알, 치어, 핑거링스(<i>fingerlings</i>) 또는 유생과 같은 비원산지 종자로부터 성장한 제 3 류의 양식물품은 그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된다.
03.01 - 0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306.11 - 0308.90	그 소호 또는 다른 소호 내에서 훈제되지 않은 물품에서 훈제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4 류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 04.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901.90 호 또는 제 2106.90 호의 낙농 조제품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4.07 - 04.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 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05.01 - 05.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5.05 - 05.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 류 또는 제 3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5.08 - 05.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 부	식물성 생산품(제 6 류-제 14 류)
주 :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배한 농산물과 원예작물은 비당사국에서 수입된 씨앗, 인경, 근경, 삽수, 접지 또는 그 밖의 식물의 살아 있는 부분에서 재배한 경우에도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만들어진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
제 6 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 06.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6.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211.2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 류	식용의 채소와 뿌리 및 괴경(塊莖)
07.01 - 07.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 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08.01 - 08.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 류	커피·차·마테(maté) 및 향신료
0901.11 - 0901.1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21 - 0901.22	이 상품군 이외의 모든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2 - 09.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4.11 - 0904.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103.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904.21 - 0904.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0710.80 호 또는 소호 제 2103.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0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11-0906.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6.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09.07 - 09.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0 류	곡물
10.01 - 10.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 11.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1.05 - 11.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2 류	채유(採油)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 12.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3 류	락(lac), 검·수지 및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1 - 13.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 14.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 부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제 15 류)
제 15 류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 동물성 또는 식물성 납(蠟)
15.01 - 15.1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11 - 1515.1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5.21 - 1515.5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2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1515.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물개 또는 물개 생산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얻어진 생산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516.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5.17 - 15.2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 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 및 식초, 담배 및 제조한 담배 대용물(제 16 류-제 24 류)
제 16 류	육류·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 16.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306 호부터 제 0308 호까지의 혼제된 물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17 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 17.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 18.02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3 - 1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806.10 - 1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9 류	곡물·고운 가루·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 베이커리 제품
1901.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1.2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버터지방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는 혼합물과 도우(doughs)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1.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낙농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006 호의 물품 또는 제 1102 호부터 제 1104 호까지의 쌀 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19.02 - 1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19.04 - 19.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 2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11 - 2009.3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8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009.41 - 2009.8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00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크랜베리(cranberry) 주스 혼합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1 류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10 - 210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3.9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0709.60 호, 제 0904.21 호 또는 제 0904.2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고추장으로 변경된 것,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12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된장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21.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1.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21.06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의 물품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1211.20 호 또는 제 1302.1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2 류	음료·주류 및 식초
22.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가 함유된 음료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22.03 – 2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8.30	이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2203 호부터 제 2208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알코올 농도가 물품의 전체 알코올 농도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2208.40 – 2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3 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23.01 – 2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3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0401 호부터 제 0406 호까지 또는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소호 제 1901.90 호의 낙농 조제품은 제외한다)에서 밀크 고형분의 함유량이 총 중량의 10 퍼센트를 초과하는 동물 사료용 조제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24 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4.02 – 24.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 부	광물성 생산품(제 25 류-제 27 류)
제 25 류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석회 및 시멘트
25.01 – 25.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6 류	광(鑛)·슬래그(slag) 및 회(灰)
26.01 – 2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7 류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p>주 1:</p>	<p>제 2707 호와 제 2710 호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이 정의의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주 2:</p>	<p>제 2710 호의 목적상, 다음 공정들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p> <p>가. 상압증류법 - 석유가 증류탑에서 끓는점에 따라 분획되고 그 증기가 응축하여 상이한 액화 분획물이 되는 분리공정, 또는</p> <p>나. 감압증류법: 분자증류법보다 낮지 않지만, 대기압 보다 낮은 압력에서 증류</p>
<p>주 3:</p>	<p>제 2710 호의 목적상, "직접혼합"이란 정제공정으로서 처리단위로부터의 다양한 석유스트림과 저장탱크로부터의 석유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최종제품은 사전에 결정된 수치로 제 2710 호에 분류되는 것이다.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7.01 - 27.06</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2707.10 - 2707.91</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2707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p>
<p>2707.99</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709.99 호의 다른 물품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2707.99 호의 페놀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709.99 호의 페놀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2707.99 호의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화학반응의 결과로 변경된 물품에 한정한다.</p>
<p>27.08 - 27.09</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27.10</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이 류의 주 1 과 주 2 에 규정된 공정 중 어느 하나의 결과로 변경된 것, 또는</p> <p>직접혼합의 결과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재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711.11 - 2711.13</p>	<p>이들 소호 중 하나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p>2711.14 - 2711.19</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2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2711.21</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1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2711.29</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711.12 호부터 소호 제 2711.2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27.12</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2713.11 - 2713.12</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2713.20</p>	<p>그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원료의 구성비가 물품 총량의 49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27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7.14 – 27.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 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제 28 류-제 38 류)
제 28 류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금속·방사성원소나 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주 1:	이 류의 주 3부터 주 5까지는 이 류의 호 또는 소호에 해당하는 상품에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주 2:	주 1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이 류의 원산지 규정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이다.
주 3: 화학반응	<p>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취급된다.</p> <p>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주 4: 정제	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 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
주 5: 분리금지	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2801.10 – 280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10 – 280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4.70 – 280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05.11 – 281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11 – 28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5.20 – 2815.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6.10 – 2816.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7 – 28.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2819.10 – 285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9 류	제 29 류 유기화합품
주 1:	이 류의 주 3부터 주 6까지는 그들 주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주 2:	주 1에도 불구하고, 이 류의 원산지규정에서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면 원산지 상품이다.

<p>주 3: 화학반응</p>	<p>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화학반응의 결과로 만들어진 이 류의 물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이 부의 목적상, '화학반응'이란 분자내 결합이 깨지고 새로운 분자내 결합이 생성되거나 분자내 원자의 공간배열의 변경결과로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가 되는 공정(생화학 공정을 포함한다)을 말한다.</p> <p>다음 사항들은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결정하는 목적상 화학 반응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p> <p>가. 물 또는 다른 용제에 용해 된 것, 나. 용제(용매물을 포함한다)의 제거, 또는 다. 결정수의 첨가 또는 제거</p>
<p>주 4: 정제</p>	<p>정제된 이 류의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 다만, 정제는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불순물의 80 퍼센트 이상이 제거된 경우에 한정한다.</p>
<p>주 5: 이성체 분리</p>	<p>이 류의 상품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이성체의 혼합물로부터 이성체의 유리 또는 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된다.</p>
<p>주 6: 분리금지</p>	<p>인조 혼합물에서 하나 이상의 물질을 분리한 결과로서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세번이 변경된 물품은 유리된 물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화학반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산지 상품으로 취급되지 아니한다.</p>
<p>2901.10 – 2942.0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제 30 류</p>	<p>의료용품</p>
<p>3001.20 – 3002.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3003.10 – 3003.90</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3003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3003 호 내의 다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p>
<p>30.04</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003 호 또는 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3005.10 – 3005.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3006.10 – 3006.7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006.9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p>
<p>3006.91</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006.92</p>	<p>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제 31 류</p>	<p>비료</p>
<p>31.01 – 31.05</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제 32 류</p>	<p>유연용 또는 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 및 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p>
<p>3201.10 – 3202.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3</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4.11 – 3204.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5</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6.11 – 3206.5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32.07 – 32.15</p>	<p>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p>제 33 류</p>	<p>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resinoid), 조제향료·화장품 또는 화장품품</p>
<p>3301.12 – 3301.90</p>	<p>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p>

33.02 – 3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4 류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11 – 3401.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402.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402.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12 – 3402.1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2.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3402.90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4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3.11 – 3403.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4.04 – 34.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10 – 350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11 – 3502.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2.20 – 350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5.03 – 3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 3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7 류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모든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702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7.02	모든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37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7.03 – 3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 38.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5.10 – 3806.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7 – 38.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09.10 – 3809.93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1.11 – 381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12 – 3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2905.3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2905.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2905.3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8.21 – 38.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3.11 – 382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38.2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28 류부터 37 류까지, 제 40 류 또는 제 90 류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38.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 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제 39 류-제 40 류)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 39.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3901 호부터 제 3915 호까지의 비원산지 폴리머의 중량이 해당 상품의 전체 폴리머 중량의 4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39.16 – 39.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01 – 40.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400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40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400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상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6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40.07 – 40.1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 부	원피·가죽·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제 41 류-제 43 류)
제 41 류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 41.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11 – 41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4.41 – 4104.49	소호 제 4104.11 호 또는 소호 제 4104.19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5.30	소호 제 4105.10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22	소호 제 4106.2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32	소호 제 4106.3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습윤상태(웨트-블루를 포함한다)에서 유연처리한 원피로 변경된 것, 또는 이 소호 또는 다른 호의 습윤상태(웨트-블루를 포함한다)에서 유연처리한 원피로부터 크리스트 원피로 변경된 것
4106.9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6.92	소호 제 4106.91 호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1.12 – 41.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 4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이들의 제품
43.0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3.02 – 4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 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제 44 류-제 46 류)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 44.2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5 류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 4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 4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0 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 및 판지와 이들의 제품(제 47 류-제 49 류)
제 47 류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또는 판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 47.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3.11 - 470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47.05 - 47.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8 류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 또는 판지의 제품
48.01 - 48.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49 류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 및 도면
49.01 - 49.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1 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제 50 류-제 63 류)
제 50 류	견
50.01 - 50.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4 - 5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0.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1 류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말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1.01 - 51.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06 - 5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1.11 - 51.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2 류	면
52.01 - 52.03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4 - 5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2.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204 호부터 제 52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2.08 - 52.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3 류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 5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6 - 53.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3.09 - 53.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4 류	인조펠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 5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4.07 – 54.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5 류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 55.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08 – 55.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5.12 – 55.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56 류	워딩(wadding)·펠트(felt) 및 부직포, 특수사,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 5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6.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205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 제 5402 호, 제 5404 호부터 제 5406 호까지 또는 제 5508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106 호부터 제 5110 호까지, 제 5204 호부터 제 5207 호까지, 제 5401 호, 제 5402 호, 제 5404 호부터 제 5406 호까지 또는 제 5509 호부터 제 5511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제 57 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개
57.01 – 57.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8 류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섬유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 58.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59 류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 59.09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59.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5106 호부터 제 5113 호까지, 제 5204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307 호, 제 5308 호, 제 5310 호 또는 제 5311 호, 제 54 류 또는 제 5509 호부터 제 551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59.11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
60.01 – 60.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레이지(greige) 직물로부터 변경된 것. 다만, 그레이지(greige) 직물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염색 또는 날염 및 완전히 마무리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주 :	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 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61.01 – 61.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편직)되고 봉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봉제 또는 다른 결합공정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모양을 갖추기 위해 편직된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주 :	<i>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i>
62.01 – 62.1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되고 봉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 63 류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와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 및 방직용 섬유제품, 념마
주 :	<i>이 류의 상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그 상품에 적용가능한 규정은 그 상품의 세번을 결정하는 구성요소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구성요소는 그 상품에 대한 규정에 명시된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해야 한다.</i>
63.01 – 63.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제 5111 호부터 5113 호까지, 제 5208 호부터 제 5212 호까지, 제 5310 호, 제 5311 호, 제 5407 호, 제 5408 호, 제 5512 호부터 제 5516 호까지, 제 5801 호부터 제 5803 호까지, 제 5903 호 또는 제 6001 호부터 제 6006 호까지의 직물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63.06 – 63.07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이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재단(또는 모양을 만들기 위한 편직)되고 봉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결합된 경우에 한정한다.
63.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직물 또는 실이 별도로 분류된다면 직물 또는 실에 적용가능한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정한다.
63.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상품이 선적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포장된 경우에는 세번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63.10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새로운 념마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새로운 념마 이외의 상품으로 변경된 것, 또는 새로운 념마 이외의 상품이 당사국 내에서 선적을 위해 최종적으로 수집되고 포장된 경우에는 세번의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제 12 부	신발류 · 모자류 ·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제 64 류-제 67 류)
제 64 류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 64.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6406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640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640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6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5 류	모자류와 그 부분품
65.01 – 65.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6 류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6603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66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66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66.02 – 66.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7 류	조제 깃털과 솜털 및 깃털이나 솜털의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이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깃털 또는 솜털 제품으로 변경된 것
67.02 – 67.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3 부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와 유리제품(제 68 류-제 70 류)
제 68 류	돌·플라스터(plaster)·시멘트·석면·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 68.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69 류	도자제품
69.01 – 69.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01 – 70.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9.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09.91 – 7009.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0 – 70.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11 – 7019.4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19.5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7019.52 호 또는 소호 제 7019.59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7019.52 – 7019.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4 부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제 71 류)
제 71 류	천연진주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10 – 7105.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6 – 7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8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1.11 – 71.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5 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제 72 류-제 83 류)
제 72 류	철강
72.01 – 72.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 73.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11 – 7304.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4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5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4.59 – 73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5 – 73.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303 호부터 제 7306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08 – 73.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11 – 731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15.1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15.1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1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5.20 – 7315.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16 – 7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1.11 – 7321.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2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2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2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2 – 73.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4.10 – 7324.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73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73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3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3.25 – 73.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4 류	구리와 그 제품
74.01 – 74.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4.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11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41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41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4.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408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4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40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4.15 - 7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75.01 - 75.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11 - 7505.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5.21 - 7505.2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5.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두께가 0.15 밀리미터 이하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5.07 - 7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 7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3.10 - 7603.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4 - 76.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608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60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60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6.10 - 76.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6.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7605 호의 것은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76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7605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76.15 - 76.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78 류	납과 그 제품
78.01 - 78.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804.11 - 780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소호 제 7804.11 호의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8.06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806 호의 납 봉·막대·프로파일·선·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7806 호의 납 봉·막대·프로파일·선·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79.01 - 79.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4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79.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뒷면을 덧대지 않은 박(薄)으로 변경된 것

79.07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7907 호의 아연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7907 호의 아연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80.01 – 8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3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0.07	그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 8007 호의 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석 판·시트 또는 스트립, 두께가(보강제는 제외한다)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석 박(薄)(인쇄한 것인지 종이·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제로 뒷면을 덧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주석 가루 또는 플레이크·주석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로 변경된 것, 또는 제 8007 호의 두께가 0.2 밀리미터를 초과하는 주석 판·시트 또는 스트립, 두께가(보강제는 제외한다) 0.2 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주석 박(薄)(인쇄한 것인지 종이·판지·플라스틱 또는 이와 유사한 보강제로 뒷면을 덧댄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주석 가루 또는 플레이크·주석 관·파이프 또는 관 또는 파이프 연결구류(예 : 커플링, 엘보우, 슬리브)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제 81 류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10 – 8113.0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2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 및 포크, 이들의 부분품
주 :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비금속의 손잡이는 그 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고려하지 아니한다.
82.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2.10 – 82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2.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02.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02.3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2.39 – 820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3 – 82.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5.10 – 8205.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또는 소호 제 8205.10 호부터 소호 제 8205.7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소호 또는 소호 제 8205.10 호부터 소호 제 8205.70 호까지의 물품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202 호부터 제 8205 호까지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07.19 호 또는 제 8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07.19 호 또는 제 82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07.19 – 82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08 – 82.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11.91 호부터 소호 제 8211.93 호까지 또는 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11.91 호부터 소호 제 8211.93 호까지 또는 제 8214 호 또는 제 8215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1.91 – 8211.9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211.94 호 또는 소호 제 8211.9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211.94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1.94 – 8211.9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2 – 82.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4.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그 소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8214.20 호의 세트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215.10 – 821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21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211 호 또는 소호 제 8215.91 호 또는 소호 제 8215.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211 호 또는 소호 제 8215.91 호 또는 소호 제 8215.99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215.91 – 821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3 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10 – 8301.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1.6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1.6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1.60 – 8301.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2 – 8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5.10 – 83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6 – 8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8.10 – 8308.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0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0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09 – 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311.10 – 831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3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3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3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6 부	기계류, 전기기기,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84 류-제 85 류)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1.10 – 8401.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1.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2.11 – 840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4.10 – 840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소호 제 84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6.10 – 8406.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0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0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07.10 – 84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0.11 – 8410.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1.11 – 8411.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1.91 호 또는 소호 제 8411.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1.91 호 또는 소호 제 8411.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1.91 – 841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2.10 – 841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3.11 – 8413.8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3.91 호 또는 소호 제 8413.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3.91 호 또는 소호 제 8413.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3.91 – 8413.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4.10 – 84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5.10 – 8415.8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6.10 – 841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7.10 – 841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8.10 – 8418.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8.91 호 또는 소호 제 8418.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8.91 호 또는 소호 제 8418.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8.91 – 841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19.11 – 8419.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1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1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1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0.91 호 또는 소호 제 8420.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0.91 호 또는 소호 제 8420.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0.91 – 842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1.11 – 8421.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1.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1.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1.21 – 8421.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1.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1.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1.91 – 8421.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2.11 – 842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3.10 – 842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4.10 – 8424.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5 – 84.2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2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3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3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3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28 – 84.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10 – 8432.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11 – 8433.6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10 – 8434.2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5.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6.10 – 843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6.91 호 또는 소호 제 843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6.91 – 843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7.10 – 843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8.10 – 843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39.10 – 8439.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39.91 호 또는 소호 제 8439.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39.91 호 또는 소호 제 8439.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39.91 – 8439.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0.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1.10 – 844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2.40 호 또는 소호 제 8442.5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2.40 호 또는 소호 제 8442.5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2.40 – 8442.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3.11 – 8443.3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3.91 호 또는 소호 제 8443.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3.91 호 또는 소호 제 8443.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3.91 – 8443.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4 – 84.4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4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4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8.11 – 8448.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48.20 호부터 소호 제 8448.5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48.20 호부터 소호 제 8448.5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48.20 – 8448.5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0.11 – 8450.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1.10 – 845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2.10 – 845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3.10 – 845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4.10 – 8454.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5.10 – 8455.2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55.30 호 또는 소호 제 845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55.30 호 또는 소호 제 845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5.30 – 845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5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59 호 또는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58 – 84.6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66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66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66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8466.9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6.9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6.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소호 제 8466.9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6.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6.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7.11 – 8467.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7.91 호부터 소호 제 8467.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7.91 호부터 소호 제 8467.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7.91 – 8467.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8.10 – 8468.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6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6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6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0.10 – 847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7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7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7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10 – 8474.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5.10 – 847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6.21 – 8476.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7.10 – 847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8.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79.10 – 8479.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7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7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7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1.10 – 848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2.10 – 8482.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2.91 호 또는 소호 제 8482.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2.91 호 또는 소호 제 8482.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2.91 – 8482.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8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82 호 또는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82 호 또는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30 – 8483.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4.10 – 8484.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4.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6.10 – 8486.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48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48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48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4.8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5 류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 및 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0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406 호, 제 8411 호, 제 8501 호 또는 제 8503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10 – 8504.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4.40 – 8504.5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5.11 – 8505.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6.10 – 850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7.10 – 850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8.11-8508.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8.7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8.7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8.7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09.40 - 8509.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0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0.10 - 8510.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1.10 - 85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2.10 - 8512.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3.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4.10 - 8514.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5.11 – 85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6.10 – 851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7.11 – 8517.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8.10 – 8518.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소호 제 8518.30 호의 세트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10 호, 소호 제 8518.21 호부터 소호 제 8518.29 호까지 또는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1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1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18 호 내의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18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1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22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2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2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21.10 – 85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2 – 85.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5.50 – 8525.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소호 제 8525.80 호의 자이로스테빌라이저 카메라로 변경된 것
8526.10 – 8527.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28 – 85.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0.10 – 8530.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3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1.10 – 85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3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10 – 8532.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3.10 – 8533.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5 – 85.3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538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538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38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39.10 – 8539.4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3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53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3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0.11 – 8540.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40.91 호 또는 소호 제 8540.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40.91 호 또는 소호 제 8540.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40.91 – 8540.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1.10 – 8542.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3.10 – 8543.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54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54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543.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4.11- 8544.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4.7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5.45- 85.4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7 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제 86 류-제 89 류)
제 86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 86.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6.03 - 86.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607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607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607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6.07 - 86.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7 류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과 부속품
주 :	<i>제 8701 호부터 제 8706 호까지의 물품의 원산지 결정의 목적상,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의 물품 생산에 사용된 제 84 류, 제 85 류, 제 87 류 또는 제 94 류의 모든 재료는 다음의 경우 원산지로 인정된다.</i> <i>1. 해당 재료가 미합중국의 영역으로부터 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리고</i> <i>2. 미합중국의 영역이 이 협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유무역지역의 일부인 경우, 해당 재료는 이 협정의 적용가능한 원산지규정하에서 원산지 재료로 간주된다.</i>
87.01 - 87.06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또는 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35 퍼센트 이상인 경우, 세번변경은 요구되지 않는다.
8707.10 - 870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들 내에서 또는 그 소호들 간에 변경된 것. 다만, 그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8708.10 - 8708.9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들 중 하나 내에서 변경된 것. 다만, 해당 물품의 그 소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다음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 또는 나. 해당 물품의 순원가의 65 퍼센트

8709.11 – 8709.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70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70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1 – 87.1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8714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8714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8714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4.10 – 8714.9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714.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714.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4.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716.10 – 8716.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8716.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8716.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871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8801.00 – 88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88.04 – 88.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 89.08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8 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0 류-제 92 류)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 ·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001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001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00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3.11 – 9003.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4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0 류 내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0 류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5.10 – 900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6.10 – 9006.6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6.91 호 또는 소호 제 9006.9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6.91 호 또는 소호 제 9006.9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6.91 – 90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호 내에서 소호 제 9007.10 호의 자이로스테빌라이저 카메라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7.91 에 해당하는 다른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7.91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7.92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7.92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7.91 – 9007.9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0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0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0.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0.50 – 9010.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0.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0.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1.10 – 9011.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2.1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3.10 – 90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4.10 – 901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5.10 – 901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7.10 – 9017.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1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1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1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18.11 – 9021.9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12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13 – 9022.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0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0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2.19 – 9022.2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2.29 – 9022.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4.10 – 9024.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4.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4.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4.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5.11 – 9025.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5.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5.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5.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6.10 – 9026.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7.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7.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7.20 – 9027.3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50 – 9027.80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7.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8.10 – 9028.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8.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8.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29.10 – 9029.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29.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29.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2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0.10 – 9030.89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0.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1.10 – 903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3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3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3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2.10 – 9032.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03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03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03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0.3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 91.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108 호부터 제 9114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08 – 91.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1.10 – 911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11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11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1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2.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112.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112.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112.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1.13 – 91.1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2 류	악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 92.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209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20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20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2.0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19 부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제 93 류)
제 93 류	무기와 총포탄,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01 – 93.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제 9305 호는 제외한다)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305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305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3.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306.21 – 9306.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3.07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0 부	잡품(제 94 류-제 96 류)

제 94 류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10 – 9401.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1.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1.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1.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3.10 – 9403.8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5.10 – 9405.6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405.91 호부터 소호 제 9405.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405.91 호부터 소호 제 9405.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405.91 – 9405.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4.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5 류	완구·게임용구와 운동용구,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5.0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그 호 내에서 변경된 것. 다만, 그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이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5.04 – 95.05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6.11 – 95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6.3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506.39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506.39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506.32 – 9506.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5.07 – 95.0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96 류	잡품
96.01 – 96.04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5	다른 류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제 96 류 내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제 96 류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6.21 – 9606.2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6.3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6.3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6.3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7.11 – 9607.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7.2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7.2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7.2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8.10 – 9608.4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8.60 호부터 소호 제 9608.99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8.60 호부터 소호 제 9608.99 호까지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8.5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08.10 호부터 소호 제 9608.40 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08.10 호부터 소호 제 9608.40 호까지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08.60 – 9608.9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09 – 96.1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1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이 호 내에서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세트로 변경된 것. 다만, 이 호의 비원산지 구성품의 가치가 해당 세트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2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12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3.10 – 9613.8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상관없이 소호 제 9613.90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다만, 소호 제 9613.90 호의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해당 물품의 거래가치 또는 공장도가격의 5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9613.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4 – 96.18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96.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제 21 부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제 97 류)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97.01 – 97.0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